

2023년도 혁신시제품 등록 및 수요과제발굴 컨설팅사업 컨설팅사 모집 공고

조달청에서 추진중인 『2023년 혁신시제품 지정 계획 공고』와 관련하여, 상용화 이전의 혁신 제품기술을 보유한 도내 기업의 혁신시제품 등록을 위한 컨설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컨설팅기관(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8일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혁신시제품이란?

-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 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 ◆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3년)동안 수의계약 대상 단, 조달청 시범구매 대상여부는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 **혁신시제품 지정·구매란?** 혁신성 평가 등을 통해 혁신시제품을 지정하고, 지정된 제품의 테스트를 희망하는 수요기관에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제공하여 일정 기간 테스트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류, 성과를 확산하는 제도

□ 혁신시제품 지정

-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 구매 가능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 혁신시제품 지정관련 특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혁신성평가)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성평가' 면제
-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혁신장터(<http://ppi.g2b.go.kr>)' '혁신제품전용몰'에 등록

□ 관련규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사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다목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2021-29호)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2021-40호)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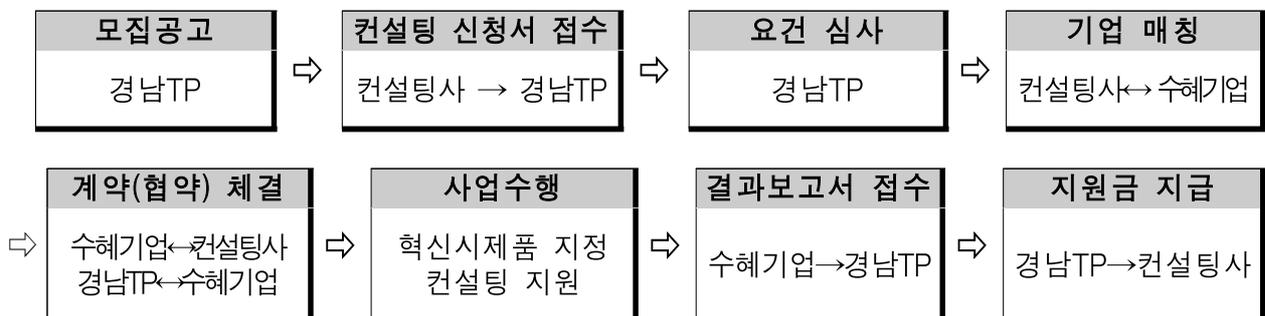
- (사업명) 2023년 혁신시제품 등록 및 수요과제발굴 컨설팅사업
- (사업기간) '2023.1월 ~ '2023.12월
- (사업목적) 2023년도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계획 공고와 관련하여 도내 혁신기업 발굴 및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사업규모) 기업당 3,500,000원 이내
- (사업내용)
 -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한 공급자제안형 제안서 작성지원
 - 혁신조달 수요자 제안형 컨설팅 지원
 - 혁신조달 요건검증 및 등록 지원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선정규모: 컨설팅사 5개사
 - 신청자격
 - 중소기업 대상 기업지원 컨설팅(조달, 특허,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에 대한 최근 3년간 수행 실적 3건 이상
 - ※ 본 사업에서의 컨설팅 범위는 수혜기업이 조달 신청을 완료하기까지에 소요되는 기술적, 행정적인 자문 등을 의미함
 -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수행기관 참여 관련 민형사상 문제와 관련되어 있거나 법정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업체, 은행여신거래 등 불량기관은 제외

3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요건심사

- 수행기관 모집 신청자격에 대한 요건심사 진행
- 수행기관 신청기준에 따라 요건 해당 기업은 매칭 후보군 등록
 - ※ 필요 시 기관 선정(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컨설팅 역량(인적 및 조직역량 등), 재무현황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결정

□ 기업매칭

- 요건 심사를 통과한 컨설팅사를 대상으로 기업과 매칭 시행
- 컨설팅사 소개자료를 바탕으로 수혜기업이 컨설팅사 선택
 - ※ 기업매칭은 수혜기업이 수행기관 선택으로 진행되며,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협약체결

- 경남TP와 수혜기업 간에 협약 체결 후
- 수혜기업과 컨설팅사 간에 계약 체결

※ 컨설팅 수행기간 종료 후 협약금액 지급

- 컨설팅 완료 및 기업의 결과보고서에 관한 확인 후 협약금액 지급(경남TP → 컨설팅사)
 - 수혜기업이 조달 접수 결과 탈락 후 재신청 의사가 있으면 제안서 수정까지를 과업 범위로 함
- 부가가치세는 수혜기업 부담

4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2022. 12. 28.(수) ~ 2023. 1. 11.(수)

□ (신청방법) 경남TP 홈페이지 신청

- 경남TP 홈페이지(www.gntp.or.kr) ⇒ 지원사업 ⇒ 지원사업신청

□ (문의처) 문희라 선임(☎ 055-259-3375, moon@gntp.or.kr)

□ 제출서류

제출서류목록	제출부수
① [별지 서식 1] 컨설팅 수행계획서	1부
② [별지 서식 2] 최근 3년(공고일 기준)간 유사사업(용역) 실적증명서	1부
③ [별지 서식 3-1 / 3-2] 사업 참여자 및 이력사항	각1부
④ [별지 서식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⑤ [별지 서식 5] 청렴서약서	1부
⑥ [별지 서식 6] 보안각서	1부
⑦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각1부
⑧ 3개년(2019~2021년) 국세청 재무제표, 2022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각1부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⑩ 상근 전문인력 보유 증빙자료(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수행계획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수행기관 책임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수행기관 선정을 취소함

5 유의사항

-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하며, 제출된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컨설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실을 재단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며, 이를 어기면 해당 업체는 모든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 사항에 대하여, 우리 재단의 수정 및 보완요청이 있을 시 응하여야 함

붙임: 신청양식 1부. 끝.